

###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1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4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|     |       |
|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 |               | 1차  | 2차  | 3차 이상 |
| 가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| 법 제28조 제2항제1호 | 250 | 350 | 500   |
| 나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28조 제3항제1호 | 150 | 200 | 300   |
| 다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| 법 제28조 제4항제1호 | 50  | 70  | 100   |
| 라.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| 법 제28조 제3항제2호 | 150 | 200 | 300   |
| 마.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| 법 제28조 제1항제1호 | 500 | 700 | 1,000 |
| 바.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8조        | 150 | 200 | 300   |

|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| 제3항제3호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
| 사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| 법 제28조 제2항제2호   | 250 | 350 | 500   |
| 아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  | 법 제28조 제3항제4호   | 150 | 200 | 300   |
| 자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| 법 제28조 제2항제2호의2 | 250 | 350 | 500   |
| 차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  | 법 제28조 제3항제4호의2 | 150 | 200 | 300   |
| 카.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| 법 제28조 제4항제2호   | 50  | 70  | 100   |
| 타.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·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| 법 제28조 제3항제5호   | 150 | 200 | 300   |
| 파.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| 법 제28조 제3항제6호   | 150 | 200 | 300   |
| 하. 법 제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·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| 법 제28조 제1항제2호   | 500 | 700 | 1,000 |
| 거.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| 법 제28조 제3항제7호   | 150 | 200 | 300   |
| 너. 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| 법 제28조 제1항제3호   | 500 | 700 | 1,000 |
| 더. 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8조 제3항제8호   | 150 | 200 | 300   |
| 러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 | 250 | 350 | 500   |
| 머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| 법 제28조 제4항제3호   | 50  | 70  | 100   |
| 버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8조 제1항제4호   | 500 | 700 | 1,000 |

|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
|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서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28조 제1항제5호 | 500 | 700 | 1,000 |
|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